

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148
------------	------

2021년 2월 25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성흠제 의원 외 16명

나. 제안일자 : 2021년 2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21년 2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성흠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과정에 교통약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체계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

위원회 위원으로 교통약자를 포함토록 노력의무 규정을 마련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교통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통약자를 포함토록 노력의무를 규정함.
(안 제4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1. 2. 16. ~ 2021. 2. 23.
-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: 원안 동의

-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를 위한 「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」('18.9)에 따라 장애인을 최소 1명('21.2 기준 2명) 위촉하고 있으며, 교통약자 위촉 노력의무를 규정하여 교통위원회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체계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 개정안에 원안 동의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 과정에 교통약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체계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위원에 교통약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 의견

-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¹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²⁾에서는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,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
-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방교통위원회인 ‘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’(이하 “교통위원회”)³⁾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및 해제,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수립 등 서울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

1)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(지방교통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.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2)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」 제113조(지방교통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“지방교통위원회”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3)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4기: 위원장(행정1부시장), 부위원장(도시교통실장), 위원(22명)

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

-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 교통약자⁴⁾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⁵⁾에서는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
서울시는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장애인을 최소 1명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‘서울시 위원회 설치·운영 지침’⁶⁾에 따라 전체 위원 22명 중, 장애인 위원 2명(9.1%)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음

- 따라서,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교통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통약자가 위원으로 선임 및 위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지침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과정에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

4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“교통약자”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
5)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」 제113조(지방교통위원회 구성·운영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6) ‘서울시 위원회 설치·운영 지침’_민관협력담당관-9181(2018. 9)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사람으로 한다.”를 “사람으로 하며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구성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구성) ③ ----- ----- ----- -----<u>사람으로 하며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